인쇄하기

무방문,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

영업점

무역금융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상품안내

상품특징

- 물품의 수출 및 용역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에게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상품

대출신청자격

-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방식(D/P, D/A)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대외무역법에 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 ②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 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기업
- ③ 상기 ① 또는 ②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 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④ 그 밖의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 자
- 중계무역방식 및 외국인도수출에 따른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액

- 용도별금융 생산자금
- ①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X 가득률
- ② 실적기준
- o 과거 1년간 수출실적 X 평균가득률
- o 향후 1년간 예상수출실적의 90% X 평균가득률
- 용도별금융 원자재자금
- ①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X 원자재의존율
- ② 실적기준
- o 과거 1년간 수출실적 X 평균원자재의존율
- o 향후 1년간 예상수출실적의 90% X 평균원자재의존율
- 용도별금융 완제품구매자금
- ①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 ② 실적기준

- ㅇ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o 향후 1년간 예상수출실적의 90%
- 포괄금융
- ①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 ② 실적기준
- ㅇ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o 향후 1년간 예상수출실적의 90%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한도대출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역금융 종류별로 다음의 융자기간을 적용하며, 한도 약정기간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약정기한 연장 또는 대출금 상환
- ① 용도별금융 생산자금, 용도별금융 원자재자금, 포괄금융
- ㅇ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 (단, 365일이내)
- o 실적기준: 최장 180일이내(90일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 연장 가능)
- ② 용도별금융 완제품구매자금
- o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단, 60일 이내)
- ㅇ 실적기준: 60일이내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한도대출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역금융 종류별로 다음의 융자기간을 적용하며, 한도 약정기간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약정기한 연장 또는 대출금 상환
- ① 용도별금융 생산자금, 용도별금융 원자재자금, 포괄금융
- o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 (단, 365일이내)
- o 실적기준: 최장 180일이내(90일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 연장 가능)
- ② 용도별금융 완제품구매자금
- ㅇ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단, 60일 이내)
- o 실적기준: 60일이내
- 만기일시상환

대출종류

한도대출, 건별대출

금리 및 이율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휴일에 인터넷뱅킹등을 통한 원금상환 불가

적용이율 결정방법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기간별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한도내 건별 실행일 및 대출기간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경됨.
- o 기준금리: 기간별 MOR
- ※ MOR(Market Opportunity Rate):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 표적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
- *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3개월: CD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 단위 이상: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ㅇ 기간별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대축금리 예시
- · 중소법인 신용등급 BBB등급, 한도대출 약정기간 1년, 건별 대출기간 3개월, 무보증신용,

2024.11.04 기준

- ㅇ 기준금리 : 연 3.43%
- o 가산금리 : 연 1.40%p ~ 2.85%p
- o 적용금리 : 최저 연 4.83% ~ 최고 연 6.28%
- · 기업형SOHO 신용등급 BBB등급, 한도대출 약정기간 1년, 건별 대출기간 3개월, 무보증신용,

2024.11.04 기준

- o 기준금리: 연 3.43%
- o 가산금리 : 연 1.56%p ~ 2.48%p
- o 적용금리: 최저 연 4.99% ~ 최고 연 5.91%
-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나누어 계산

원리금상환 방법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 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 ㅇ [담보신탁] 이용 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 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 출원금(약정금액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 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 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부과시기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 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휴일에 인터넷뱅킹등을 통한 원금상환 불가

이용안내

담보 및 보증 제공 여부

- 대출실행 시 필요한 경우 담보(보증서 포함) 제공가능

유의사항 및 기타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KB스타클럽제도 등에 선정되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됨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

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 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 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 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 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66-6호(2024.11.04)
- 유효기간 (2024.11.04 ~ 2026.10.31)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개시일: 2024.11.04

- 종료일: 2026.10.31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차 외환 인터넷 서비스 가입 경로 확대 (변경 적용일: 2021.07.02)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 전)

영업점에 "외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 후 전산 등록된 사업자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외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서 "외환 인터넷 서비 스" 이용신청서를 제출 후 전산 등록된 사업자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2차 전문방식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 이수관 거래 신설(변경 적용일: 2022.04.08)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수출실적 이수관 방법 변경

(변경 전)

서면을 통해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 이수관

(변경 후)

서면 또는 전문방식을 통해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 이수관

(2)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융자한도 산정기준 변경

(변경 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의 50% 이내

(변경 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의 100% 이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 추가(2024.11.04)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관련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만 기 경과 후 기한의이익상실 안내

(변경전)

-(신설)

(변경후)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 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 다.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여